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16594(본소), 2021가단10699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길, 강성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정세은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50,756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7,219,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 기간

2015. 2. 2.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 단가

가. LPG kg 단가 94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의 변동은 매월 말일 자정 연동 조정한다.

※ 계약단가는 2015. 1. 1. C 공도를 기준으로 한다. (966.4/kg 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9.경까지 원고에게 LPG를 공급하면서 매월 C 공도 가격에 103.6원을 더한 금액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지급한 금액은 37,219,000원이다(단, 탱크에 남아 있는 LPG 재고량 2,100kg 기준).

다.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단가와 C 공도 가격의 차이 26.4원을 기준으로 하고, 탱크에 남아 있는 LPG 재고량을 689kg으로 보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은 5,650,7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C 공도 가격에서 26.4원 할인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오히려 C 공도 가격에서 초과된 가격으로 청구를 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과도하게 LPG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초과 지급된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C 공도 가격은 계약서 작성일이 2015. 2. 2. 이므로 2015. 2. 공도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2015. 1. 공도 가격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공도 가격은 공시되어 원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2015. 2. 공도 가격인 836.4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C 공도 가격에서 103.6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LPG의 공급가격을 C 공도 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하되, 그 가격은 kg당 2015. 1. 1. C 공도가격 996.4원 대비 940원으로 한다'라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피고는 공도가격이 변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2. 2.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착오로 2010. 1. C 공도가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대로라면 LPG 공급가격 역시 위 1월 C 공도가격을 기준으로 26.4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LPG 공급가격을 기재할 때만 제대로 2월 C 공도가격을 파악해서 금액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LPG 금액이 일관되게 C 공도 가격에 103.6원을 더한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 기간 위 금액보다 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특히 피고는 최초 답변서에서는 C 공도 가격에 26.4원을 더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주장을 변경하였다), ④ 피고가 청구한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고가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대금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되지도 못하는 점, ⑤ C 공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설사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감당하여야 할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의 문언대로 'kg당 C 공도 가격에서 26.4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중단될 당시 탱크에 남아있는 LPG량이 원고가 자인하는 689kg을 초과한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5,650,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